

【구립동안흥통데이케어센터 이용 안내문】

1. 이용안내

이용대상		이용시간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어르신 -노인성질환어르신(자립보행 가능 어르신)		-평일: 월요일~금요일(8시 ~ 22시) -주말: 토요일(8시 ~ 17시) ※송영시간 포함 (송영시간은 한 시간 이내로 운영)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건강진단서 각 1부 -수급자의 경우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이용자와 보호자가 필히 함께 내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선제검사(PCR) 음성결과 문자 또는 확인서	

2. 본 센터는 이용시설로 연중 지속 이용가능하나 이용을 희망하는 대기자들을 위하여 1개월이상 장기간 미이용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주이상 결석이 발생하는 경우에 차순위 대기자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질환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장기간 미이용시에는 필히 사전에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센터에서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송영코스에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용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송영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시간 변동 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호차(스타렉스) 010-6570-3665 / 2호차(마티즈) 010-9570-3665**

4. 타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를 이용할 경우 필히 센터와 상의하고 공지하여 주시고 추 후 발생한 재가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초과분에 대하여 보호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센터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어르신 관련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보호자께서는 전화, 의견함, 인터넷카페(<http://cafe.daum.net/hdaycare2>)를 통해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이용료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메시지, 메일 등을 통하여 연락드리며, 매월 15일(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전후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입금시-어르신 성함/정확한 이용료 금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국민은행 010901-04-276526 (예금주: 구립동안흥통데이케어센터)**

등 급	주간 8~10시간 이용시					야간 10~12시간 이용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일 보험수가	64,400	59,660	55,080	53,580	52,050	70,950	65,720	60,720	59,190	57,690
일 본인부담금(15%)	9,660	8,949	8,262	8,037	7,808	10,643	9,858	9,108	8,879	8,654
일 본인부담금(9%)	5,796	5,369	4,957	4,822	4,685	6,386	5,915	5,465	5,327	5,192
일 본인부담금(6%)	3,864	3,580	3,305	3,215	3,123	4,257	3,943	3,643	3,551	3,461

※일반 - 건강보험공단 80% 지원, 본인부담금 15%

※경감 - 건강보험공단 91.0% 지원, 본인부담금 9.0%

- 건강보험공단 94.0% 지원, 본인부담금 6.0%

※기초생활수급권자 - 건강보험공단 100% 지원

※미이용수가 - 본인부담금의 50%

※비급여항목 - 종식비 3,500원

- 석식비 3,500원

- 간식비 1,000원

■구립동안홍릉데이케어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대상

서비스대상은 데이케어센터 이용을 희망하는자로서 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자로 회복기 뇌졸중, 허약노인, 치매노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주야간동안 보호가 필요한 노인으로 한다. 단, 등급이 없는 대상자는 입소절차에 따라 시설장이 최종 허락을 할 경우 가능하다.

2.서비스 대상 제외자

제1조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정신과적인 이상행동이 두드러지는 노인으로서 의료행위와 처치를 필요로 하는 노인
- 2)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결핵, 간염, 피부병 등의 법정전염성 질환 등)
- 3)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노인(통제 불능, 사고위험성 높음 등)
- 4) 말기암 환자 및 중증의 환자로서 전문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노인
- 5) 일상생활에서 서비스 제공 시간 내내 전문적인 1:1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
- 6) 기타 시설장이 서비스 대상 제외자로 판단한 노인

3.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센터의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시설 설치기준 및 인원 규정에 따라 정한다.

- 1) 센터의 이용정원은 20명으로 한다.
- 2) 이용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 3) 이용 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 변경한다.
- 4) 이용자 모집방법은 노인 또는 가족 등이 사업시설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시설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① 이용자 모집은 센터 홈페이지,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다음카페 등의 온라인 홍보와 센터게시판, 구청소식지, 전단지 배포 등의 오프라인을 통해 모집 홍보한다.

②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시에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및 프로그램에 대해 홍보한다.

③ 센터에 이용문의 또는 상담 시 1차 전화로 응대하고 가능하면 보호자 및 이용대상자가 직접 센터에 내방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④ 상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준비서류 및 준비사항을 정확히 안내해드린다.

4. 이용절차 이용대상자의 이용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1) 센터방문상담 및 대상자 초기면접을 실시한다.
- 2) 이용이 결정되면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3)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인지기능검사, 낙상위험도, 욕창위험도를 평가하고 욕구사정을 한다.
- 4) 장기요양급여계획을 수립하고, 나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하도록 한다.

5. 계약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본인이 치매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6.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센터와 이용자 및 보호자간의 이 계약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데 있다.

7.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하되 본 센터를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갱신후의 인정서 유효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작성한다.

8. 구비서류 이용인의 입소구비서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1) 이용신청서 1부
- 2)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 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4) 치매진단서 1부(해당자)
- 5) 전염성질환건강진단서 1부
- 6)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해당자)

9. 계약해지

-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②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
-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③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⑤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10. 퇴소절차 이용 중 퇴소 여건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한다.

- 1) 보호자에 의한 퇴소 : 보호자퇴소신청 - 연계기록지 작성, 통보 - 퇴소
- 2) 문제발생으로 퇴소 : 문제발생 - 사례회의 - 이용자가족상담 - 퇴소

11.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이용자의 상태 및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한 알 권리, 서비스제공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② 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간담회, 가족행사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
 - ③ 계약 내용 위반 또는 급여제공에 불만이 있을 경우 시정요구를 할 권리
-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② '이용자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 ④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

12.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센터가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 ① 센터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센터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④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센터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 ② 센터에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④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⑤ 센터의 이용도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 ⑥ 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때

구립동안홍릉데이케어센터
[02-968-2861/2862]